

건양대학교 학생자치기구 감사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감사시행세칙(이하 본 세칙)은 건양대학교 총대의원회 설립 목적에 의거하여 학생자치기구(단과대학 및 학과 포함.) 및 언론기구의 제반업무 수행사항을 파악하여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회 사업의 공개와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학생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총대의원회에서 시행하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세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해 재학생이 납부한 회비로 사업하는 교내 모든 자치기구 및 언론기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2 장 감 사 위 원 회>

제3조(지위)

본 세칙 제1조에 의거하여 각각의 감사에 대하여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총대의원회에서 갖는다.

제4조(구성)

1. 감사의 권한은 총대의원회 모든 부서 구성원에게 있다.
2. 교내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언론기구, 단과대학 및 각 학부,과 이하 감사대상기구)의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한다.

제5조(의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은 감사업무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임을 자각하고 학우들의 대리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본 세칙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
2. 공정한 감사를 진행할 것.
3. 사적인 감정을 감사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선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건양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또는 위원)으로서 건양대 학생자치기구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건양 학우들로부터 신뢰받는 학생자치기구를 이루는데 일조함을 지향하며, 건양 학우들의 시선에 맞는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에 있어 공정함과 투명함을 잃지 않을 것임을 건양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업무 및 권한)

공정하고 깨끗한 감사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일정 확정 및 시달권
2. 감사주체 선정권
3. 감사시행 결과에 대한 징계 및 건의
가. 소명기회부여, 경고, 예산집행 중지
4. 재 감사 시행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본 세칙의 개정, 발의권
나. 징계, 변상, 사법처리는 학교학생처 및 경찰서에 건의.
6. 공약시행 감사
7. 예산사용 관리 및 감사
8. 추가경정 예산의 승인권
9. 학생회비 확정권
10. 총학생회 정부 의원 소환 요구권
11. 총학생회 임원 및 국·차장 출석 요구권

제8조(위원장 및 위원)

감사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당연직이며, 의장 꺾기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을 계승하며 의장, 부의장이 모두 꺾기 시에는 감사국장이 계승한다.

제9조(소집)

감사위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 장 감 사>

제10조(감사의 구분과 시기)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감사 : 매 학기당 2회 시행한다.
2. 임시감사 : 특정사안(축제 및 제반행사)에 대한 감사.
3. 특별감사(공개감사, 불시감사) :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후 3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11조(감사일정)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정기감사의 일정 통보와 자료제출에 대한 공문을 감사 시행 7일전까지, 임시 감사의 경우 5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구에 통보한다.(단, 제보에 의한 특별감사의 경우 1일 내에 통보한다.
2. 감사대상기구는 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해당 일까지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장소)

각 감사는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시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기준)

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1. 학우들을 위한 사업 진행 여부 판단.
2.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 평가.
3. 계획한 사업의 이행 정도 확인.
4. 사업의 실효성 판단.
5. 회계보고서의 증빙서류 확인.
6. 간이영수증 확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한 항목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계좌이체 명세표를 첨부한다.)
7. 재정의 남용, 낭비, 잘못된 계약이나 구매 행위 확인.
8.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

제14조(감사의 자료 및 내용)

감사의 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자료(양식) : 별지 서식 참조
※장부는 일반 회계 장부 양식에 맞추어 번호대로 작성하고 찢거나 공란이 없어야 한다.
2. 감사의 내용
 - 가. 사업감사
 - 나. 예산감사
 - 다. 조직감사
 - 라. 공약감사
 - 마. 비품감사
 - 바. 기타 조직의 특성에 부합되는 감사(총대의원회 결정)
3. 감사 자료
장부, 영수증내역서의 작성은 수정이 불가능한 펜으로 수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오기의 경우 적색으로 삭선을 긋고 담당자의 직인을 찍는다.(사유를 표기할 것.)
4.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 영수증 첨부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매출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아야 한다.
기타 원칙의 영수증 외 간이영수증 등의 금액한도는 총대의원회의 권한 하에 결정한다.

제15조(감사자료 제출시한)

감사위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감사실시 2일전 까지 감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주체)

감사위는 감사위원을 3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피 감사주체)

감사 시 "감사위"가 요구하는 모든 피 감사주체는 감사 장소에 필히 출석하여야 한다. (불참 시 감사 거부로 인정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감수하여야 한다.)

제18조(참관인 및 증인)

감사위는 감사 시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한 참관인의 입회를 허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을 입회하여 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위는 감사시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사자료를 첨부하여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의 직인이 있는 감사결과를 교내 및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20조(공문발송)

감사위는 감사시행 전까지 감사대상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감사와 재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감사위에서 이를 정한다.

제21조(감사의 연기요령)

1. 감사위는 부득이 감사시행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해당 기구의 감사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유권 해석 및 사유 인정은 감사위에서만 행할 수 있다.)
2. 감사대상기구는 감사시행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통한 감사시행 연기를 감사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위는 이를 심의 후 받아들임과 동시에 차후 감사위원장의 승인 하에 감사일정을 확정, 통지해 주어야 한다. (단, 감사위에서 정당한 감사 시행연기 사유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기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 연기 사유서는 감사 시행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보관 및 공개)

1. "감사위"는 감사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감사자료는 감사결과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통장사본 등을 말한다.
3. 감사에 불응한 경우나 부적절한 감사 결과 발견 시, 교내에 대자보 및 용지로 게시하여 학우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감 사>

제23조(시행이유)

1. “감사위”에 제출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위원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
2. 감사결과에 대한 피 감사주체의 이의제기가 감사위원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제24조(재감사 시행)

재감사는 본 세칙 제3장에 준하여 “감사위”에서 일정을 단축하여 시행한다.

<제 5 장 징 계>

제25조(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감사시행과 감사대상기구가 올바르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의 요구와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주어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의 추진과 집행을 하도록 해주는 것에 있다.

제26조(징계의 대상)

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2. 피 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 또는 불참했을 경우
3. 예산감사에 있어서 예산지출의 오차가 발견되었거나 예산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4. 사업의 집행이 회칙에 어긋났을 경우
5. 집행 부서장들이 올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감사 반출시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7. 기타 본 세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27조(징계의 내용)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의(주의 2회부터는 경고로 대체한다.)
2. 경고(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집행정지를 시작한다.)
※예산집행정지 기간 : 2주, 4주, 6주, 8주, 무기한
3. 물질적 보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4. 예산회수(학생회비)
5. 총학생회 및 학과, 학부학생회에 대한 탄핵발의
6. 감사대상기구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7. 감사대상기구의 정.부회장 대한 탄핵발의
8. 피 감사주체에 대한 학칙에 의한 처벌 요구

제28조(징계의 의결)

제27조의 각 항은 총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29조(징계의 발효)

감사위에서 의결한 징계는 해당 감사대상기구에게 결과가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징계의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부터 발효된다. (징계 내용을 학교에 알린다.)

제30조(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를 받은 감사대상기구는 징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감사위에 제출하고 감사 대상기구 대표(단체장)가 직접 감사위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이의 제기는 접수되며, 이 때 감사위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단, 징계를 받은 감사대상기구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27조 1항부터 3항까지의 징계 기간은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단, 총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2. 주의를 제외한 징계의 기간은 감사대상기구의 장의 임기에 준하여 누적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발의)

이 세칙의 개정 발의는 총대의원회 과반수의 요구로 발의한다.

제3조(개정)

개정 발의된 세칙은 총대의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4조(세부 시행지침의 제정)

감사위는 필요한 경우 감사위의 의결에 따라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이 시행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건양대학교 학생자치기구 감사시행세칙 제1호, 2018.02.20. 제정]